

# 정 관

HSIS 주식회사

# 정 관

## 제 1 장 총 칙

제 1조(상호) 본 회사는 HSIS 주식회사라고 한다.

제 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기업컨설팅
1. 개인 투자 컨설팅
1. 주식 대차 및 대여 보관업
1. 주주의결권의 대리행사업
1.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제 3조(본점의 소재지) 본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수원시내에 둔다.

단, 이사의 결의로 각지에 지점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 4조(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 방법은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발행되는 일간 경인매일에 게재한다.

## 제 2 장 주식과 주권

제 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20,000,000주로 한다.

제 6조(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제 7조(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 8조(주권)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500주권 4종으로 한다.

**제 9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단, 전자등록 할 경우 제8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주금납입의 지체)** 주금 납입을 지체한 주주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이 끝날 때까지 지체주금 1000원에 대하여 1원의 비율로서 과태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신규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상법 제41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2조(시가발행)** 본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가액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3조(주권의 명의개서 등)** ①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상속, 유증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 회사는 주주명부의 기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 명의개서 대리인은 이사의 결의에 의하여 선정한다.

**제14조(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본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본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

**제15조(주권의 재발행)** ①주권의 분할, 병합, 오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본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구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본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단, 전자등록 할 경우 전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수수료)**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 정하는 청구를 하는 자는 본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①본 회사는 영업년도 종료일로부터 정기주주 총회의 종결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

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가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주주의 주소 등의 신고)** 본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본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의 성명, 주소와 인감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 3 장 사 채

**제19조(사채의 발행)** 본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 및 주주 외의 자에게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20조(전환사채의 발행)** ①전환사채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 필요에 의하여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전환사채의 총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발생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1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신주인수권부사채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 필요에 의하여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 주주 및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2조(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제23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정한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주주의 성명 및 인감신고 등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24조(소집)** ①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②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소집한다.

**제25조(소집통지)**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10일전에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총회전에 모든 주주의 서면, 전신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로 단축할 수 있다. 단,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등기된 공고방법에 따라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이사로 한다.

**제27조(의장의 질서유지권 등)**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기 위한 발언, 기타 유형력의 행사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주주총회의 결의 및 의결정족수)** ①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 및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②의결권 없는 주식은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다음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정관변경

2.수권자본의 증가

3.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해산, 청산 또는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

4.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1 이상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1 이상의 양수

5.이사, 감사 및 청산인의 해임

6.자본의 감소

7.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8.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④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의결권등)** ①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함에는 표결전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보존, 비치한다.

## 제 5 장 임 원

**제31조(이사의 원수)** 본 회사의 이사는 1인이상으로 한다. 단 이사를 2인이하로 선임한 경우 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를 각자 대표할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③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3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이사의 보선)** ①이사가 결원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한다. 그러나 잔여 임원의 법정원수가 충족되고 또한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는 보결 선임을 보류하거나 다음 정기주주 총회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②보결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임기와 같이 한다.

**제35조(이사의 직무)** ①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6조(이사의 보고의무)** ①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①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②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상으로 한다.

**제38조(상담역 및 고문)** ①본 회사는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상근하지 아니하는 상담역이나 고문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 제 6 장 감 사

**제39조(감사)** ①본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단, 자본금이 10억 미만의 경우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②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한다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0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41조(감사의 보선)**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43조(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44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감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②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③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상으로 한다.

## 제 7 장 계 산

**제45조(영업년도)** 본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6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과 비치등)** ①본 회사의 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의일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기타 재무제표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

②감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의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의일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부분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이사가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수익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
2. 별도적립금 약간
3. 주주배당금 약간
4. 후기이월금 약간
5. 임의 적립금

**제48조(이익 배당)** 이익배당금은 금전 또는 주식으로 하며,매결산기말일 현재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9조(중간배당)** ①본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중간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다.

③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위와 같은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사업연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50조(배당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 배당금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 부 칙

**제51조(내부 규정)**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의 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

한 세칙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52조(최초의 영업년도)** 본 회사의 최초의 영업년도의 시점은 회사설립일로부터 당  
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3조(발기인의 성명,주소등)** 본 회사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이 정  
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이상과 같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다.

2024년 09월 30일

발기인 김영수

발기인 오승환